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

울산지방법원은, 제조회사 A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A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자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기업은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I. 하급심 유죄 판결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주식회사 A사는 경남 양산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입니다.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여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 4. 4. A사의 대표이사에게, 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II. 불리한 양형 요소: 안전점검 후 해당 설비의 결함 방치, 안전교육 미흡

법원은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위반

지금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는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의무들이 주로 문제되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앞선 14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위 의무 위반이 적시된 사례는 제9호 판결이 유일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이나 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적시에 시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여부 및 개선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 Areas

중대재해센터

Contact

조상욱 변호사

02-528-5355

swcho@yulchon.com

안범진 변호사

02-528-5919

bcan@yulchon.com

김수현 변호사

02-528-5070

soohyun@yulchon.com

정원 변호사

02-528-5283

w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허우영 변호사

02-528-5522

wyhur@yulchon.com

김동현 변호사

02-528-5312

donghyunkim@yulchon.com

박찬웅 변호사

02-528-6160

chanwoongpark@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